



문서번호	맑은환경과-34059
결재일자	2015. 12. 18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520호

주무관	환경정책팀장	맑은환경과장	주민생활국장	부구청장
전미애	代최철성	박사채	소판수	12/18 이비오
협조	법률전문관 代이상수 법제팀장 이상수			

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

2015. 12.

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· 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 · 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 획 보 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 도 자 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 D T 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뉴 스 레 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구 소 식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● 중 점 홍 보 사 항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「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」 일부 개정 계획

법제처의 「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,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I. 추진근거

- 환경정책기본법,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
-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(법제처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(법제처)

II. 개정사유

-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 반영
 - 민감정보 공개 제한(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삭제)
- 상위법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 개정사항 정비
 -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
 -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내용 개정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내용 반영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맞춤법 및 용어 등 정리

III.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주 요 개 정 내 용
상위법 관련조항 및 용어 정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조(목적) ·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32조 →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및 제54조 - 제13조(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) ·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→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- 제2장, 제10조 ·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 용어 정리
상위법에 맞게 환경보전계획 수립절차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0조(환경보전계획) 제4항 <u>구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 · 환경보전계획 수립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없는 성동환경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·확정하는 절차를 법령에 맞게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·확정하도록 개정
민감정보 공개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6조(환경조사) 제1항 · 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이나 관련자의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삭제
성별균형 참여내용 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9조(구성)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, --- 위촉한다.

IV. 추진일정

- 조례개정(안)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: 2015. 12. 24. ~ 2016. 1. 13.(20일간)
 - 기간 중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
- 조례개정(안) 숙독회의: 2016. 1. 15.
-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: 2016. 1. 18.
- 조례규칙심의회 개최(기획예산과): 2016. 1. 19.(화) 예정
- 조례개정(안) 구의회 상정 및 심의: 2016. 2.

V. 행정사항

- 규제 및 법제심사: 기획예산과
- 부패영향평가: 감사담당관
- 성별영향분석평가: 보육가족과

붙임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